

도서출판에관한시행규칙

제정 2003. 4. 1

개정 2012. 3. 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출판부 내규 제 16조에 의거 도서출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도서의 정의) 이 규정에서 말하는 도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일반 교양도서 : 대학생의 교양과 지식의 함양을 위하여 기획한 도서, 번역도서 또는 대학문고 등
2. 학술도서 : 학술상의 연구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독창적인 학술보고서
3. 기획도서 :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양도서 및 전문 분야의 도서
4. 교양교재 : 현재 개설되어 있거나 앞으로 개설될 교양 교과목으로 개정하지 않고 2년동안 200부 이상 판매가 가능한 교재.
5. 전공교재 : 현재 개설되어 있거나 앞으로 개설될 전공 교과목으로 개정하지 않고 2년동안 200부 이상 판매가 가능한 교재

제3조(교재 인세) ① 전공 및 교양 교재일 경우에는 규정 제 11조에 따른 교재의 인세는 초판 200부까지는 판매 마진율의 10% 이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, 201부 이상 판매부수에 대한 인세는 현금으로 10%를 지급한다.

② 대학교재, 번역서, 편저서 등이 아닌 독창적인 학술도서 및 기획도서는 초판일 경우 정가의 12%를 지급한다.

③ 증판일 경우에는 초판의 기준율에 5%를 가산한다.

제4조(보급 가격) 출판된 도서의 보급가격은 출판비에 출판비용의 30%를 추가하여 결정한다.

제5조(수수료) 출판도서를 위탁 판매할 경우 정가의 10% 이내의 수수료를 위탁 판매처에 지불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시행규칙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1. (개정일) 이 시행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